

회계기본법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46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최은석 · 서지영 · 조정훈
김정재 · 김기현 · 이종배
최보운 · 최수진 · 배준영
서일준 · 김성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및 개별 법인·단체별 근거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어, 영리법인,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 상호금융기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주체 등 다양한 법인등의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규율 체계와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포함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회계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

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각 법인들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회계제도의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하여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사전승인,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및 관계 법령·제도 개선 요청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법인별 주무관청에 분산되어 있는 회계정책·표준제정·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인등의 회계원칙과 회계정보 작성·공시 의무,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기준의 적용 원칙, 회계감독 업무체계, 회계정책에 대한 민간의 참여 및 회계 관련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회계정보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아가 국가회계위원회가 교육·홍보·문화행사 등을 통한 회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회계의 날 지정, 초·중·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단계에 이르는 회계 교육 강화,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인력 양성,

회계 연구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 회계투명성 제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회계정책 이행을 위한 조세 감면 등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 생태계 전반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으로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과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법인등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회계처리 및 그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하고, 회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법인등의 회계정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에 관한 정책과 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계획 등의 수립,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사전승인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법인등이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국가회계위원회가 해당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

고, 이 경우 주무관청의 장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각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 등에게 회계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국가회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국가회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회계처리의 원칙으로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할 것과 법인등의 활동 내용과 그 성과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법인등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현금주의 또는 단식부기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등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법인등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사인은 회계감사 대상 법인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전문가적 주의의무를 다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감사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정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회계감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법인등은 매 회계연도마다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쉽게 회계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계정보를 공시하여야 함(안 제16조).

카. 국가회계위원회가 회계감독의 일환으로 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감리업무의 운영·절차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감리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

타. 국가회계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법인등의 회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감독원을 설립하고, 회계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

파. 국가회계위원회는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회계투명성의 가치가 제고되는 회계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함(안 제19조).

하.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하고, 국가회계위원회가 회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거. 정부가 국민의 회계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회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너. 정부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금융계,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과 협력하여야 하고, 공공연구기관이나 사업자 등에 대하여 교육 설비·교재개발·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2조).

더. 정부의 회계 관련 제도·정책 등을 조사·연구하는 연구기관 및 법인·단체의 육성과 이에 대한 지원과 경비의 출연·보조를 규정 함(안 제23조).

러. 국가회계위원회는 법인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의 확산·정착을 위한 시책을 수

립하도록 하며, 회계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6조).

며. 정부가 회계투명성 제고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회계전문인력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회계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법인등의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

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

라.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마.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자.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조직

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
리단

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
지방공단

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
래업자

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

거. 기타 다른 법률에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정한 법인 등

2. “회계정보”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경제적 자원
의 취득·보유·이용 및 그 변동과 관련된 사실을 회계처리기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기록·측정·분류·요약하여 보고한 정보
로서, 재무제표·회계기록·예산·결산·정산·재정현황 보고 등
회계처리의 결과를 포함한다.

3. “재무제표”란 법인등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일목요연하게 나
타내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

나. 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회계처리기준”이란 법인등이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작성할 때 따라야 할 작성기준을 말한다.

5. “회계감사”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법인등의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의 적정성을 확인·검토·검증·인증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6. “회계감사기준”이란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행위기준을 말한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관

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법인등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이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말한다.

9. “공시”란 법인등의 회계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전문기업인 회사
2. 「대외무역법」 제19조의4에 따른 전략물자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3. 자산총액 대비 부채총액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유한책임회사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
4. 그 밖에 법인등의 규모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 회계감사 및 감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회계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국가회계위원회 설치) ① 법인등의 회계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정책과 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과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회계투명성 제고와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에 따른 법인등의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해당 법인등
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요청할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 등(이하 “관계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요
청할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6.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의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7. 제17조에 따른 법인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업무에 관한 사항

8.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한 사
항

9. 그 밖에 법인등의 회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
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 ① 위원회는 법인등이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위
반하였을 때 해당 법인등의 주무관청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무관청의 장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

다.

② 위원회는 관계기관장등에 대하여 법인등의 회계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명
3.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명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회계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1명
5.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대표 1명
6.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대표 1명
7.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의 대표 1명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제1항 각 호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 및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 각 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결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국 등)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회계정보의 작성 원칙

제11조(회계원칙) 법인등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법인등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법인등의 회계는 법인등의 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법인등의 회계는 법인등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등의 회계는 현금주의 또는 단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12조(회계처리기준) ① 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4장 독립적 감사인의 회계감사

제13조(회계감사 의무) 법인등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인은 회계감사 대상 법인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가적 주의의무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회계감사기준에 따

라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장 회계정보의 공시

제16조(회계정보의 공시) ① 법인등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인등의 이해관계자가 이해하기 쉽게 회계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관계자가 회계정보를 항상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시의무의 대상, 공시의 구체적인 내용·방식 및 공시 기한 등은 법인등의 법적 형태, 사업의 규모 및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회계감독 업무체계

제17조(회계감리) ① 위원회는 회계감독의 일환으로 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에 대

하여 감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업무의 운영·절차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회계감독원의 설립 등) ① 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법인등의 회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회계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③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회계감독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

제19조(회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위원회는 회계투명성의 가치가 제고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의 날) ① 회계투명성 제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을 회계의 날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회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회계 교육 강화) ① 정부는 국민의 회계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회계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회계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회계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회계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에 필요한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금융계,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나 사업자 등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회계 연구기관 등의 육성) ① 정부는 회계 관련 제도나 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육성을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제·개정, 회계정보 공시 방법 수립, 회계감독체계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육성을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연구기관이나 제2항의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4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지원) 위원회는 법인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확산·정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회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민간의 참여) 위원회는 회계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7조(포상) ① 정부는 회계투명성 제고에 관한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회계전문인력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원) 정부는 이 법에 따른 회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회계제도 개선을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적용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회계감사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적용되고 있는

회계감사기준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삭제한다.